

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

■ 서류접수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방문기간
- 서류제출 : 11월 9일(목) ~ 11월 18일(토) (10일간) 10:00~16:00
-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'23.10.20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-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검증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,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.
-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합니다.
-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하며,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.

■ 제출서류

구분	필수	추가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
공동 서류	○		공급(특별)신청서, 무주택 청약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•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
	○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부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부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가 확인 시 필요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기재필수)	본인 및 세대원 (배우자 제외)	•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 •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·비속이 있는 경우 (직계 존·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)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•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-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 •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- 만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일반 공급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)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부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전부포함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부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전부포함"으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전부포함"으로 발급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[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]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-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불가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기재필수)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(동반 체류 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	본인 (청약자) 및 세대원	•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되지 않음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(용도 :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) ※ 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